

보도참고자료



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0.3.10	.(화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50)	담 당 자	허 성 사무관 (02-2100-2655)
	거래소 유가본부 본부장보 라 성 채(02-3774-8505) 거래소 코스닥본부 본부장보 송 영 훈(02-3774-9503)		이 정 의 부서장 (02-3774-8580) 김 재 향 부서장 (02-3774-9600)

제 목 :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됩니다.

1. 추진 배경

- □ **코로나19 확산**과 **국제유가 급락**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으로 **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**한 가운데,
 - * 코스피지수 : (2.14일)2,243.59 → (2.28.)1,987.01 → (3.9.)1,954.77 → (3.10.)1,962.93 코스닥지수 : (2.14일) 688.91 → (2.28.) 610.73 → (3.9.) 614.60 → (3.10.) 619.97
 - 3월 들어서는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 - *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(억원)
 - 코스피 : ('19년)3,180.1 ('20.1월)3,964.6 (2월)5,091.1 (3.2~9일)6,428.1 코스닥 : ('19년)1,027.0 ('20.1월)1,438.9 (2월)1,554.6 (3.2~9일)1,628.5
 -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□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,
 - 3개월('20.3.10~6.9일)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.
 - 시행시기와 관련하여, 오늘(3.10(화)) 변경된 기준(거래소 시행세칙)을 시행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3.11일(수)부터 10거래일(2주)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.

□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旣**마련된 컨틴전시플랜**에 따라 **적절한 조치**를 **신속·과감**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.

2.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* 강화 내용

*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**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** 금지하여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('17.3월 도입)

①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

- 당일 주가가 5%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* 3배(현재는 6배)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,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(현재는 5배)로 낮추겠습니다.
 - * 해당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/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
- 주가가 20%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, 코스닥 1.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.

<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>

시장	주가 하락폭	공매도 비중 ¹⁾	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
	5~10%	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²⁾	6배→ 3배 이상
유가	10% 이상	-	6배→ <mark>3배</mark> 이상
	20% 이상	-	2배 이상 (신설)
코스닥	5~10%	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²⁾	5배→ <mark>2배</mark> 이상
	10% 이상	-	5배→ <mark>2배</mark> 이상
	20% 이상	-	1.5배 이상 (신설)

- 주1)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/ 당일 전체 거래대금
- 주2) 현재 코스피 15%(코스닥 12%), 직전분기 코스피(코스닥150)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가 2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%를 적용
- ②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**공매도 금지기간**을 현행 1거래일에서 **10거래일(2주)로 연장**하겠습니다.



▼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